

##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

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.3% -> 1.6% 인상 , 2019. 10. 1 ~  
 근로자, 사용자부담부분이 각각 0.65% -> 0.8%로 인상됨.

### ■ 인상 이유?

- '17.12월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년 10.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, 지급수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.
- 이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.1부터 0.3%p 인상하게 되었습니다.

<고용보험법 개정 내용, '19.10.1. 시행>

-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(평균임금의 50% → 60%)
- 지급기간 연장(90일 ~ 240일 → 120일 ~ 270일, 30세미만 구간 폐지)
- 주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
-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

<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, '19.10.1.시행>

-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(5일 → 10일)

### ■ 시행?

-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.
- 실업급여 보험료율 1.3%에서 1.6%로 인상 됩니다.(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부분이 0.65%→0.8%)

### ■ 대상 사업장?

- 금년 10. 1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10. 1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10. 1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(1.6%)을 적용받게 됩니다.

### ■ 시행 이후 보험가입자(사업주,근로자)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?

-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.3%에서 1.6%로 0.3%p 인상되어,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.65%에서 0.8%로 0.15%p 씩 인상된 보험료 부담 됩니다.

예) 월평균보수 100만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할 때, 사업주와 근로자는 월 보험료가 6,500원(0.65%)에서 8,000원(0.8%)으로 인상되므로 각각 1,5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.

### ■ 19년도(귀속) 보수총액신고 및 정산보험료 산정방식?

-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'20.3.15.일까지 '19년도(귀속) 연간보수총액을 보

보험료율 변경 전·후 기간별로 분리(1월~9월, 10월~12월)하여 신고하고, 공단에서는 기간별 분리신고된 보수총액에 변경 전·후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'19년도(귀속)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.

=> 내년 3월 보수총액 신고시 1월부터 9월까지의 보수총액과 10월~12월까지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.